



(질의 2) 수입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에는 해당되지 않고, 통합 공고 요건에만 해당되는 경우 세관 직원에 따라 통합공고에 의한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제1항에 따르면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는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제2항에서는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도1074판결)에서도 '세관장확인대상 고시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니라도 다른 법령, 즉 대외무역법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는 조건 등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관세법 제270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세관장무연한 수출입물품에 대한 심적 또는 짐차업무 수행 중에 해당 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니더라도 통합공고에 의한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입화주 등은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